

예 산 총 칙

2014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14,397,057	9,431,912
일반회계	290,219,944	8,706,598
특별회계	24,177,113	725,313
기타특별회계	24,177,113	725,313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08,553	24,257
주택사업특별회계	549,888	16,497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096,733	32,90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990,628	29,719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65,251	13,958
주차장특별회계	391,698	11,751
수질개선특별회계	19,456,438	583,69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417,924	12,538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 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352,375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9,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수 있다.